

#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 번	안 호
	1177

발의연월일 : 2009. 10. 14.

발 의 자 : ~~최재용~~의원 외 4인

### 1. 개정이유

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(2009. 4. 1)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을 정함.(안 제5조)
- 나. 의원은 「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경남도 정책기획관 - 4140호(2009. 4. 27)

### 4. 본 문 : 붙임

#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윤리심사 등)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영리행위의 제한) 의원은 「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의원의 직업이 “농업인”일 경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윤리심사 등)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4조(윤리심사 등)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5조(겸직신고) ①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6조(영리행위의 제한) 의원은 「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의원의 직업이 “농업인”일 경우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7조(시행규칙)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

(별지 제1호 서식)

## 고성군의회의원 겸직(변경)신고서

소속정당				선거구분	지역구	
성명	한글					
	한자			생년월일		
겸직내용	기관· 단체명					
	직위			재직기간		
	보수	(택일) 연 월	원 원	전화번호		
	주소					

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## 고성군의회의원 (인)

## 고성군의회의장 귀하

